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97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하는 노선버스의 운행형태를 정하는 한편, 과태료 감경·가중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안 제1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을 규정할 필요. 노선버스 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를 저상버스 도입 의무대상으로 규정.

나. 과태료 감경·가중 부과(안 별표3)

과태료 감경·가중 부과하는 기산점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으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 : 044-201-3870, 3805 / 팩스 : 044-201-5581